

룩셈부르크	Luxembourg	유럽
ABS 정보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 최종적으로는 법령원문 및 각 국가의 연락기관을 통해 확인받기를 권장합니다.

I. 국가 일반

○ 조약관련 정보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4-08-07
나고야의정서 서명일	2011-06-23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10-25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7-01-23

○ 나고야의정서에 의한 잠정국가보고서

(Interim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P)

국가보고서 여부	정보없음
마지막 제출일	정보없음
보고서정보 링크	정보없음

○ CBD National Report

마지막 제출일	2018-12-21
보고서정보 링크	https://chm.cbd.int/database/record?documentID=241238

II. 기관 정보

○ 국가연락기관 (NFP, National Focal Point)

기관명(국문)	환경기후지속가능개발부
기관명(영문)	Ministry of the Environment,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ECDD)
기관명(원문)	Ministère de l'Environnement, du Climat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MECDD)
소관유전자원	모든 유전자원
홈페이지링크	https://environnement.public.lu/fr.html

○ 국가책임기관 (CN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기관명(국문)	정보없음
기관명(영문)	정보없음
기관명(원문)	정보없음
소관유전자원	정보없음
홈페이지링크	정보없음

○ 점검기관 (CP, CheckPoint)

기관명(국문)	정보없음
기관명(영문)	정보없음
기관명(원문)	정보없음
홈페이지링크	정보없음

○ 그 밖의 관련기관

기관명(국문)	정보없음
기관명(영문)	정보없음
기관명(원문)	정보없음
홈페이지링크	정보없음

○ 국가별 ABSCH

기관명칭	정보없음
홈페이지링크	정보없음

III. 법령정보

○ ABS 법령유무

법령유무	X
법령명(국문)	정보없음
법령명(영문)	정보없음
법령명(원문)	정보없음
최근제개정일시	정보없음
법체계 우선순위	정보없음
법령구성(조문수)	정보없음
법령링크	정보없음

○ 기타 관계법령

법령명(국문)	환경법
법령명(영문)	Environmental Code
기관명(원문)	Code de l'environnement
마지막 개정일시	2020-07-13
관련분야	3, 4
법령링크	http://legilux.public.lu/eli/etat/leg/code/environnement/20200713

법령명(국문)	환경보호기금 설립을 위한 1999년 5월 31일 개정법, 자연산림행정 수립을 위한 2009년 6월 5일 개정법, 그리고 자연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과학적 방법의 재구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협력에 관한 2005년 8월 3일 개정법의 개정과 자연 및 자연자원보호에 관한 2018년 7월 18일 법률
법령명(영문)	Law of 18 July 2018 on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and amending 1 ° the amended law of 31 May 1999 establishing a fund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2 ° the amended law of 5 June 2009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on of Nature and Forests; 3 ° the amended law of 3 August 2005 concerning the partnership between the unions of municipalities and the State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scientific approach to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기관명(원문)	Loi du 18 juillet 2018 concernant la protection de la nature et des ressources naturelles et modifiant 1° la loi modifiée du 31 mai 1999 portant institution d'un fond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2° la loi modifiée du 5 juin 2009 portant création de l'Administration de la nature et des forêts ; 3° la loi modifiée du 3 août 2005 concernant le partenariat entre les syndicats de communes et l'État et la restructuration de la démarche scientifique en matière de protection de la nature et des ressources naturelles.
마지막 개정일시	2018-09-05
관련분야	3, 4
법령링크	http://legilux.public.lu/eli/etat/leg/loi/2018/07/18/a771/jo

○ 관련정책

정책명(국문)	정보없음
정책명(영문)	정보없음
정책명(원문)	정보없음
시행일	정보없음
정책링크	정보없음

IV. ABS 기초정보

○ ABS 기초정보

적용대상	정보없음
적용예외	정보없음
내외국인구분여부	정보없음
제재여부	정보없음
제재형태	정보없음
관련정보링크	정보없음

V. 절차정보

○ 접근절차 정보(PIC/MAT)

절차요약	https://www.abs.go.kr/css/irs/down/absfile/60_PIC.hwp
절차정보 홈페이지 링크	정보없음

○ 이익공유 유형

금전적 이익공유	정보없음
비금전적 이익공유	정보없음
기타	정보없음
관련정보 링크	정보없음

○ 절차준수 등 그 밖의 조치

후속조치	정보없음
국외 법률에 대한 준수조치	정보없음
국내 법률에 대한 준수조치	정보없음
의무사항	EU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 연구비 수령단계 및 최종제품개발단계에서 책임기관에 적절주의의무 신고(DECLARE 정보시스템 이용)
권고사항	정보없음

○ 서식 등

관련서식 정보	정보없음
이용자가이드라인	정보없음

VI. 기타정보

○ 관련자료

자료유형	정보없음
대표제목(국문)	정보없음
대표제목(영문/원문)	정보없음
게시일자	정보없음
내용요약	정보없음
자료출처	정보없음
홈페이지 링크	정보없음

○ 기타

기타사항	
------	--